

제405회 정례회
'22. 11. 23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일

3. 제안사유

-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시설의 이용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, 공유 재산법령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시설 이용 허가 등 시설의 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이용자 및 이용료에 관한 용어 정의(안 제3조제2호·제3호)
- 시설 이용 신청, 변경·취소 및 허가의 절차·방법에 관한 규정 및 서식 정비·신설(안 제4조 및 별지 제1·2·3호서식)
- 이용료의 납부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5조)
- 공유재산법령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대부료 관련 규정 삭제 및 조문 정비(안 제7조제3항, 제8조 및 별표 3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대진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개정안은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시설의 이용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, 공유재산법령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며, 시설 이용허가 등 시설의 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.
 - 지방자치법 제15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, 미래여성플라자는 공공시설 이용에 해당하므로 “사용”, “사용자”를 “이용자”, “이용료”로 개정하는 것은 적합함.
- 안 제4조는 시설의 이용 신청과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 - 도지사는 시설 이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이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, 이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·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 변경·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, 효율적인 시설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시설 이용 및 변경·취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
 - 별지 제1·2·3호서식은 안 제4조에 따른 시설 이용·변경·취소 및 이용료 면제 신청 서식으로, 용어 정의 및 관련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적합함.

- 안 제5조는 이용료 납부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, 이용료 납부 면제 대상에 도의회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(제2항제1호), 도 출자·출연기관이 교육·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(제2항제3호), 법령에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(제2항제4호)를 신설함.
- 제2항제1호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, 제2항제3호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봄. 제2항제4호는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<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>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 2. ~ 3. (생략)
 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.

<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>

제17조(사용료 감면) ① ~ ④ (생략)

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~ 2. (생략)

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
3. ~ 4. (생략)

⑥ ~ ⑦ (생략)

○ 안 제6조부터 제8조, 제12조부터 제14조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삭제 및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임.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2조와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6조는 일반재산에 한정하여 대부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조례 제8조는 적합하지 않은 조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함.

<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>

제32조(대부료)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. 다만,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.

<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>

제4장 일반재산

제1절 대부

제26조(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) ① 대부한 재산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

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 공유재산인 충북미래여성플라자의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설사용료 징수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함.